

2017년도

성폭력 예방교육 교육자료

2017. 11.



① 공공기관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: 연 1회 1시간 이상 필수

- ▶ 관련근거 :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여성가족부(2017) 성폭력예방교육지침

② 중요한 것은 성폭력 ‘예방’을 위한 실천 의지

교육 목표

- 성폭력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해 성폭력 예방의 필요성 인식 및 실천 의지 제고
-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인적 차원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조직적 ·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시스템 이해 확산
-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전 국민적 예방 노력 확산

-
- ▶ 교육의 목적이 성폭력 ‘예방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받는 동안 어떻게 하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.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버리는 것 그 자체가 성폭력 예방의 출발이다.



교육을 들어가며...

문제입니다!

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?

- ① 집안일은 무조건 ()가 해야지!
- ② 첫째는 무조건 ()를 낳아야지!
- ③ 회사 일은 ()가 잘하지!





교육을 들어가며...

문제입니다!

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?

정답은 없습니다.

당신의 편견을 지워주세요.





성폭력이란?

상대방의 **동의를 구하지 않는 모든 성적 접촉**





성폭력은 왜 일어날까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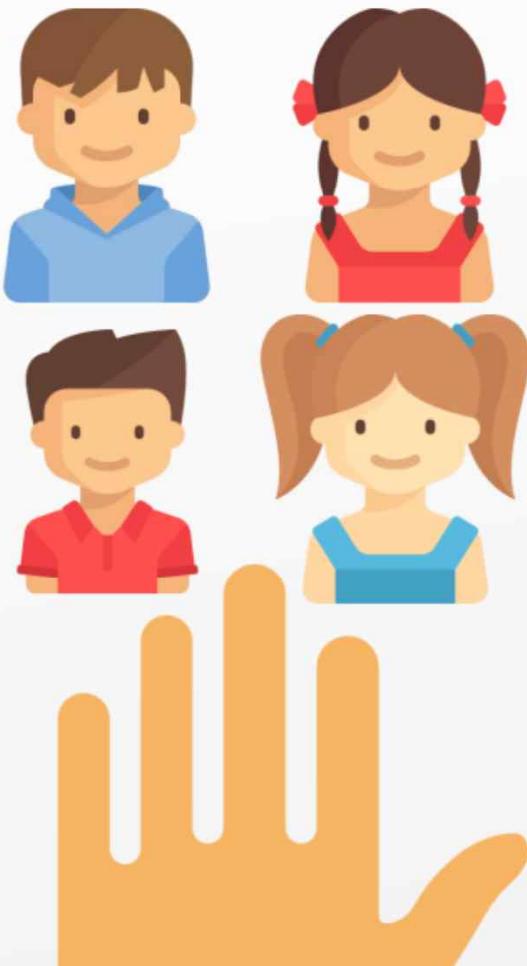
상대방을 무시하는
태도와 생각

“좋은데 싫은 척~?”
비뚤어진 성문화

“여자니까~ 남자니까~”
성별 고정관념



이런 것도 성폭력입니다!



남성이 남자아이
만지는건 괜찮죠?

애가 예뻐서 살짝
만졌는데 그게 문제야?

예뻐서 용돈주고
얼굴 쓰다듬어 주지도 못해?

내가 좀 아는 애인데~
정 없이 왜 그래??



이런 것도 성폭력입니다!



술 때문에… 이제는 안 통해!!

"술 취해 내 집인줄"…이웃집 여성 추행 男 징역행

입력시간 | 2016.08.03 10:37 | 유수정 기자 crystal@edaily.co.kr

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착각하여 옆집에 들어가,
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
쓰다듬은 행위

의





이런 것도 성폭력입니다!

✓ 신체 접촉 없어도 성폭력!

직장 동료 대상 '몰카' 20차례 촬영한 30대 남성 '징역 10월'

[입력 2016-09-13 11:53:27 | 수정 2016-09-13 오전 11:58:00]

[여성신문, 2016. 9. 13]

30대 남성 피의자가 화장실, 샤워실 등에
몰래 카메라를 설치해
20여 차례 여성 직장동료의 모습 촬영





이런 것도 성폭력입니다!

✓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요구

"게임 못하면 뽀뽀해"...전북 사립대학서 성추행
[머니투데이, 2017. 3. 14]

술자리 게임에서 진 후배에게
술을 못 마시겠으면 '뽀뽀'와 '포옹'을 하라고
요구한 사례





성폭력은 권위를 남용하여 휘두르는 폭력입니다!



교사의 권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

초등학교 남교사가 공개된 교실에서
숙제 검사 과정 중
훈육을 목적으로 9세 학생의
성기를 옷 위로 수 차례 만진 사례

[대법원 2005도6791]





성폭력은 권위를 남용하여 휘두르는 폭력입니다!



친분을 이용한 성폭력 사례

섬마을 공무원인 A씨가
친구 딸인 중학생 B양을 협박하여 2년 간 성폭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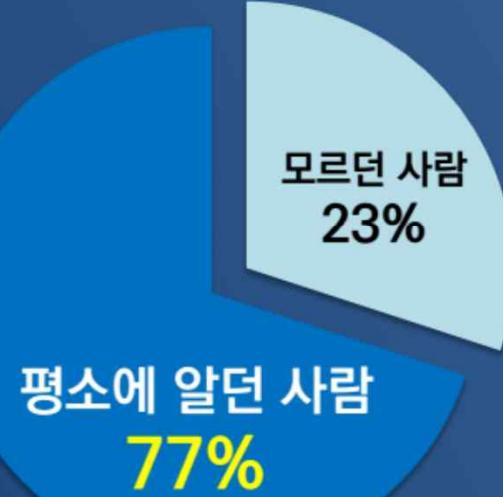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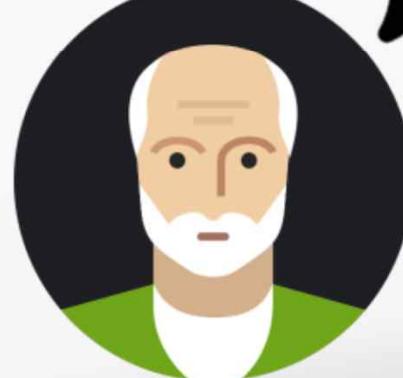
[뉴스1, 2016.6.21.]





성폭력은 낯선 사람에
의해서만 발생한다?

“우리 마을은
서로 다 알아서
그런 일 없어~!!”



강간 범죄의 경우
가해자의 77.7%가
평소에 알던 사람!

(출처: 여성가족부,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)



성폭력은
젊은 여성에게만
일어난다?



“우리 동네에는
노인들 밖에 없어서
그런 일 없어~!!

(출처: 대검찰청, 2016 범죄분석)

생후 3개월 ~노인!



성폭력 피해자 연령대

1,448명!



남성 피해자수

연령 제한 없음!
성별 제한 없음!



말해봤자 소용없다?



“이런 걸 어디에 말해
남사스럽게…
망신만 당할꺼야..”

NO!

아닙니다!!
피해 회복을 도와드립니다!

경찰신고 112



여성경찰도 있어요!

폭력상담 110
(1366)



초기 상담 및
지원 해드려요!



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을까요?



86%

52%

남성

“주변에 알려지면 **창피한데**”

“말해봤자 소용 없겠지.. 나는 **남자인데**”

여성

“신고해도 **소용 없겠지**”

“이런 일을 당했을 때 **도와주는 곳**도 있나?”

남성의 86%, 여성의 52%가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음



※ 동영상 시청 방법 : “본교 홈페이지 로그인 > My Campus > 폭력 예방교육 팝업창 > 동영상보기”
또는 “학교공지사항 > 폭력 예방교육 공지사항 > 동영상보기”



생각을 바꿔보세요!

성폭력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닙니다!

밤 늦게 술을..

걔가 먼저 ~

옷차림이~?
그러니까~





생각을 바꿔보세요!

싫으면 그 때
말했어야지~

왜 이제 와서
신고를 하고 그래?
모르는 사이도 아니고…



혹시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요?

피해자가 신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!



생각을 바꿔보세요!



해주세요!

- 피해자에게 귀 기울이기
- 가해자의 사과 요구하기
- 피해 회복 도와주기
- 내 일처럼 생각하기
- 서로 서로 지켜주기



하지 말아주세요!

- 피해자 비난
- 피해자 침묵 강요
- 사소한 일 취급
- 가해자 편들기
- 소문내기



“이제, 어떤 피해라도 꼭 112에 신고하세요!”



*출처 : “성폭력예방교육-지역사회지도자용”, [2013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(특별위촉) 실전과정] p43, 여성가족부

112로 신고를 하면,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!



“피해 상담은 110, 비밀보장 걱정 마세요~” (1366)



110
(1366)
상담 요청



법률
지원



상담
지원



의료
지원

110(1366)으로 상담요청 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성폭력은 남·녀 사이의 문제가 아닌,
‘사람’ 사이의 문제!

공존을 위해선 서로 소통하고,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.

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 (성 역할 구분)
편견 깨기!

성 문제에 있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,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 올바로 인식하려는 대학생들의 개선 노력과 상대의 ‘성적자기결정권’을 존중하는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.